



산재보험 60주년
www.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

!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

Contents

- 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 2
- 전자신고 3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6
- 보수총액신고 FAQ 10
-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12
-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 안내 13



보수총액신고
안내 동영상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보수총액신고 - 서면신고

- ▶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사업장 정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⑬번 항목은 6~9페이지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서식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2024.3.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자명, 전화번호 필수 기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의 4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은 3.15.(금)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0505-123-****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생산물():	

연번	성명	주인(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분	①-1 건설·범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1				Y()						
2				Y()						
3				Y()						
4				Y()						
5				Y()						
6				Y()						
7				Y()						
8				Y()						
9				Y()						
합 계										

④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해당시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분 (아래 √표시)	기간(변경 전)	기간(변경 후)								
													☐ 산재 ☐ 고용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산납총당, ()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⑬ "자활근로자중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동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보험료부과구분	①-1 건설·범용업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1				Y()							
2				Y()							
3				Y()							
4				Y()							
합 계											

03 보수총액신고 - 전자신고

❗ 입력항목별 작성방법은 6~9페이지 참고

보수총액신고 - 전자신고(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연간보수총액 신고하기(엑셀파일 불러오기)

작성방식 선택 ☐ 화면입력방식 ☒ 엑셀파일 불러오기 ①

신고절차 건너뛰기 ② 건실기계주동사 신고방법

보험년도 * 2023 사업장관리번호 * -- -- ③

사업상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성자명 * 연락처 *

④ 보수총액 확인신고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자활근로자 및 노조전임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초기화

⑥ 퇴직중인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입력정보 0건

종사자코드 조회하기 ⑦ 작성파일(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불러오기 ⑧ 입력정보 엑셀저장 ⑨ 부과부토 구분 실명

연번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성명 *	부과부토 구분	건실·별독립 근로유역자	산재 * 취득일 * (전입일)	전보일 * (전출일)	(산재) * 연간보수총액	(고용) * 종사자코드	고용 * 취득일 * (전입일)	전보일 * (전출일)	(고용) * 연간보수총액
----	-------------------	------	------------	-----------------	------------------------	----------------	------------------	-----------------	------------------------	----------------	------------------

①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③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⑤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 보수총액 입력)
→ ⑦ 작성파일 불러오기 → ⑧ 입력정보 엑셀저장

① 입력항목별 작성방법은 6~9페이지 참고

>> 입력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정보 X

임시저장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정보 X

사전점검 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류 수정 후 다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정보 X

접수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오류 데이터이지만 접수는 가능한 오류입니다

접수가 불가능한 오류이며,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 전자신고(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보수총액신고 접수현황 조회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등록

민원접수현황 조회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

신재신청(최초유족장제) 조회

근로내송확인신고 현황 조회

임시직장자로 조회

통지수신방법 설정

고용/보수관리 비밀번호 사용여부

실용조사 수신 설정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

마이페이지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보수총액신고서, 보험료신고서에 대한 접수내역 조회 및 출력에 가능합니다. (인증 안했어하는 조항을 꼭)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접수완료 했으나 접수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할 불가(보수관리/보험료신고 접수일로부터 1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드리니 시간을 두고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일자

2024-01-08 ~ 2024-02-08 1주일 중주

세부조건

검색조건 선택

조회

>>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경품 응모하기

접수 완료

접수내역월

접수번호	2000-2024-4*****
민원서류명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일자	2024년 02월 07일
신고인	신고인

※ 축하! 토탈서비스 경품행사 참여

경품행사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입력하신 정보는 경품당첨 안내 및 발송 등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

조회

참여

총 조회 1건

검색처장

접수일	접수번호	신청민원서류명	관리번호	구분	진행상황	서식출력	경품행사
2024-02-07	200020244 *****	보수총액신고서	101-09 *****	신재	고용	접수	조회 참여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01 상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①-1 건설, 별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김희*	56****-*****		Y()	2019.01.04			2019.01.04		
이현*	85****-*****		Y()	2023.07.01			2023.07.01		

- **(건설·별목업 근무 이력자)** 2023년도에 건설·별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과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이력자 있는 경우 체크(토달서비스 엑셀파일 신고 시에는 해당란에 ‘Y’ 기재)합니다.
- **(연간보수총액)**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건설·별목업 근무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사업장으로 신고할 보수를 제외하고 기재)

※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건설현장내 건설기계조종사” 보수총액 산정 방법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보수총액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건설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 - [공사도급계약] 건설현장 근로기간의 보수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신고(산재 보수총액과 동일) - [건설기계임대계약]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 을 신고

해당자는 “건설 · 별목업 근무이력자”란에 체크(V) 표시, 전자신고(엑셀업로드)시 “건설 · 별목업 근무이력자”란에 “Y” 입력
 ※ 사무직 근로자, 건설현장 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소속 사업장에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02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 일용근로자 VS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구 분	설 명	적용범위		예 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일 또는 시간단위의 고용계약 - 일급 형식으로 보수 지급	산재	당연 적용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며 10일간 주방 업무를 하는 근로자
		고용	당연 적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산재	당연 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고용	적용제외(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03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전체)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아래 해당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합을 기재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일용↔일용) 근로 공백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65세 이후 일용보수액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H2, E9) 중 고안·직능만 적용된 기간이 존재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
 ▪ 2023. 1. 1.부터 모든 사업장의 고용허가외국인(H2, E9) 고안·직능 당연적용

※ 공단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용확인고서 상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작성 칸을 구분하여 안내드리며, 실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 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작성 칸이 없는 사업장은 고객센터(☎1588-0075)로 칸이 생성된 서식을 요청 한 후 작성(전자신고 건은 신고 칸 생성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04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및 그밖의 근로자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illegible]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수)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및 그밖의 근로자 보수를 기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수를 매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며, 상용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05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해당 사업장만 기재)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 분 (아래 v표시)	변경 전 기간(~)	변경 후 기간(~)
☐ 산재 ☐ 고용		

▶ **(산재보험 업종)** 2023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고대상 전체 근로자의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고용보험 직능요율)** 2023년도 중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경우, 신고대상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을 직능요율 변경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023년도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기간이 인쇄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06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 건설, 별목업 근로이익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	박근*		58	Y()	2023.01.01			2023.01.01				
2				Y()								
3				Y()								
4				Y()								
합계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사 보수총액)**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사”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보험료 부과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에 보수를 기재하고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습니다. (11페이지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참조)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07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⑩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가 4월분 월별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분할 고지되며, 분납이 아닌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 합니다.

➤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정산 결과 발생한 과납보험료를 앞으로 낼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는 선납충당에 체크(✓) 하고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반환 계좌를 기재합니다. (토달서비스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과납금환급 계좌신청에서 입력합니다)

※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반환 가능

08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④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해당시 √표시)

➤ 2023년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괄호안에 체크(✓) 표시합니다. (다른 신고항목 입력 불요)

09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산재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가가 제외되는 근로자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	○	×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	×	×	×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	×	○	○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55	×	×	○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자
56	×	×	○	×	별정직 · 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자), 예술인
58	○	×	×	○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수급자)
60	○	○	×	○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틀린 근로자의 처리방법

「피보험자·고용정보내용 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신고 FAQ

>> “보수총액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의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⑩-11, ⑩-14, ⑩-15, ⑩-16, ⑩-31 항목)는 포함)

>> 근로자 퇴사시 퇴직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3년도 중에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란에 체크(✓)하여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직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직근로자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FAQ

>>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적용대상	처리내용	비 고
퇴직정산 우선 적용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15일) 이전 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 신고순서 무관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로만 보수총액 수정 가능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15일) 이후 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달서비스(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성실신고 안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조사 자료로
보험료를 직권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 근로소득 대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매년 7월(전전년도 수정·경정분)과 9월(전년도 정기분)에 그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보수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퇴직정산자 포함)하고
있으니 보수총액신고 시 보수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퇴직
정산된 근로자**의 보수가 착오신고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정산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도 (재)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계정산
동영상 안내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 2023년(귀속)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관련 유의사항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누락시 신고 필요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21.6.8. 신설)에 따라 보험료가 상한액(월보험료 550,880원, 연간보험료 6,610,5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개인별 보험료로 적용해야 하므로,
- 단기예술인은 사업장 단위 연간보수총액으로 신고는 하되, 단기 예술인 신고 누락 또는 보수액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지켜셔야 합니다.



01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or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신고

02

처리완료

03

보수총액신고

※ 단기예술인 신고대상이 누락된 경우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보수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노무제공내용 정정신고(예술인)』를 해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사항

구 분	내 용		관련 근거
월보험료 부과	일반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상 월평균보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상 월보수총액	
보수총액신고 대상 금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❶)에서 비과세소득(❷), 경비(❸) 등을 제외한 금액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5
필요경비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5호
필요경비 공제산식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❶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❷} × 25%❸		
부과 하한액	월 단위 기준보수 800,000원		
부과 상한액	2023년 기준 월보험료 550,880원, 연간보험료 6,610,56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0호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 안내

>> 2024년 부과고지 사업장 월보험료 부과방식 변경안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 개정으로 '24.1.1.부터 월별보험료 계산방식이 일수에 비례한 계산방식에서 월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되며, '24년 1월분(보험월 기준) 월별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1. 부과고지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 적용대상이며, 자진신고 사업장 및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 등은 적용대상 아님
2. 월별보험료 월단위 부과방식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해당 월의 초일(휴일무관)부터 근무하거나 퇴사(전근)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해당 월의 월별 보험료 부과, **해당 월의 중간부터 근무시** 해당 월보험료 **미부과**
-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과 동일하게 상실 또는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comwel.or.kr), 고용·산재 토털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사업주) 등을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구 분	가입대상(임의가입)	혜 택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다만,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불가)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없거나, 고용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적용제외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가입 불가 ※ 고용번호증만을 보유한 경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보험료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소상공인만 해당)	실업급여(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하는 경우) 및 직업능력 개발 비용 지원

>>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증명원 발급서비스 안내

조회방법	발급대상 서비스
①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검색 ②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민원서비스신청·안내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검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는 근로자만 발급가능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는 사업주만 발급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확인서 '이력없음'도 발급가능	① (고용) 피보험자격내역확인서 (일용근로자내역서 포함) ② (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③ 고용·산재보험료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④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⑥ (보상) 보험급여지급확인원 ⑦ (보상)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입증명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16종의 증명원을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용(고용) : 1월(자진신고사업장(건설·별목업)의 부과내역 제외), 종합소득세신고용(산재·고용) : 5월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 안내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범위 확대) 특정 품목·산업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
-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단발성 용차기사도 적용
- (보험료 산정기준) 화물차주의 실제 소득(“월 보수액”)에 비례하여 보험료 산정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실무자료실 → ’23.7.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안내’ 참고 바랍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안내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예는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 경감 신청

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신청서 다운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 안내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 사업장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 → 접수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사업주의 사회보험 신고사무 간소화를 위한 [임금정보 프로그램(가칭)] 오픈 안내

사업주의 매월 조세·사회보험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내 [임금정보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여 2024년 2월 중 오픈합니다.

이용대상

고용산재보험 성립사업장

내용

근로자 임금정보 한 번의 입력으로 임금대장 관리 및 조세·사회보험 등 관련 서식(9종) 자동작성을 지원하고 4대보험 신고 연계

서식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근로소득 간이세액 및 일용소득 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각종 지원 사업 및 제도 안내

>> 퇴직연금 푸른씨앗 제도 안내

복잡한 퇴직연금, 푸른씨앗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푸른씨앗은 수수료 감면해주고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해 드립니다!

푸른씨앗이란?

오직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유일 공적
퇴직급여제도

수수료는 5년간 0원

'24년 신규가입시,
5년간 수수료 0원

국가지원금은 3년간 10%

최저임금의 130%
(*'24년 268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사업주 및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

문의

☎1661-0075

인터넷에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을
검색해보세요!

>> 2024년 두루누리·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준 안내

구 분		세부 기준	
		두루누리	가사근로자
지원대상 사업 규모❶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0인 이상	예술인 · 노무제공자	
지원대상 보수 수준❷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수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❸	
지원기간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가사근로자❹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제외	재 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 ① (두루누리)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합산보수액 기준(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 ③ (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취득이력 없는 신규가입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에 한하여 지원
- ④ (가사근로자)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후 3년 내(*'24.12.31.) 지원신청한 자에 대해 36개월까지 지원

>>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납품대금 연동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적용대상 제외 사유

①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수·위탁 거래기간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③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범위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④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7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 산재보험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시·공정한 산재 보상, 일상 회복 및 일터 복귀 지원,
전문 재활치료 강화를 통해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24년 **쉽고, 빠르고, 간편한**

Easy-Quick 전자신고 이벤트

<https://total.comwel.or.kr>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쉽고,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최초 전자신고 할 경우 **경품 당첨확률 UP!!**

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3월 15일(금)

[보험료 신고]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4월 1일(월)

행사대상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사업장 대표자 또는 담당자, 사무대행기관 등

경 품 커피 기프티콘(1,200명)

당첨자 발표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에 당첨자 명단 게시 및 SMS 개별안내)

1200명



커피 기프티콘
(1만원 상당)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공익침해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